

제433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2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2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4)
2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	3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4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4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4
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4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4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4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4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4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4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4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13)	4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4
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4
2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
2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4)	8
2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9

(17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박홍근 인사청문과 관련한 안건과 조세소위원회 및 경제
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 박홍근 위원님이 사임하셨고 조인철 위원님이 다시 보임되
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박홍근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양 간사 위원들이 협의해서 작성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박홍근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7시42분)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716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3월 19일 목요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

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5일 전인 3월 18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께서는 청문회 24시간 전인 3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3)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2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2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44분)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의 박성훈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성훈 조세소위원회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3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2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업계 경쟁 촉진 및 청년 관세사의 법인 창업 활성화, 관세법인 중심의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측면에서 타당하다

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결격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해당 임원 등을 교체할 경우 면허 취소의 예외로 하고 주류 기기 등에 대한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저장 용기를 신고한 후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서의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종이문서 작성 관행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여 국세징수 절차에서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않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신설하되 양도소득금액 100% 공제는 2026년 5월 31일까지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80% 공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50% 공제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환율변동위험회피 과생상품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외국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에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저세율국가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유보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수입배당금액 또한 2026년에 한하여 100%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해외 투자자의 조속한 국내 투자 복귀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내시장복귀계좌 상품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조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술한 국내시장복귀계좌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과생상품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등의 사유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재공

인 시 제한 기간을 두려는 것으로 고의성 높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5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기획예산처가 반도체산업 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기금을 정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대안)은 김상훈·안도걸·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위원회 위원을 1인 증원하고 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금의 간접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 부여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 만료 은행장의 직무수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은행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태호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전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4)

(17시56분)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하여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채권 관리를 개선하고 채납징수율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확인원의 채납자 개인정보 악용, 실태확인에 따른 인격권 제한 등의 부작용

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태료채권은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여 실태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모양입니다. 안 계시면 소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7시58분)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한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정태호 간사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안전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정일영 정태호 조인철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출장 위원(2인)

김태년 이인선

○청가 위원(6인)

안규백 임이자 정성호 조승래 천하람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기획예산처
처장직무대행 임기근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차장 이명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0.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이상 4건 3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91)

이상 3건 3월 12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2026. 3.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이상 3건 3월 16일 회부됨

○청원 회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3. 13. 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3월 16일 회부됨